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4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 (안 제1조)
- 나. 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 (안 제4조)
- 다. 시설의 운영과 수탁자 선정기준 (안 제5~7조)
- 라.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안 제8조)
- 마. 사용료 및 사용의 제한, 변상의 책임 (안 제9~11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36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 11. 15.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7조 : 수탁자의 의무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8조 :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9조 : 사용료 등
○ 제4조 : 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	○ 제10조 : 사용의 제한
○ 제5조 : 운영	○ 제11조 : 변상책임
○ 제6조 : 수탁자 선정 기준	

-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 제3조는 주민편익시설 중 도서관, 보건지소, 시흥3동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따른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 제5~7조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8조는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에 대한 사항을
- 제9~10조는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사용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11조는 수탁자 및 사용자의 사용중 변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 남부도로사업소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시설구성
목 욕 탕	1층	505.41㎡	◦ 남·여탕, 락커룸, 사우나, 찜질방 등 ◦ 화장실, 방제센터 등 부대시설
도 서 관	2층	299.25㎡	◦ 도서관 및 카페형 열람공간 ◦ 사무실, 세미나실
보 건 지 소	2층	332.38㎡	◦ 재활운동치료실, 만성질환상담실 ◦ 영양교육실, 상담실 등
시 흥 3 동 자 치 회 관	1층	37.5㎡	◦ 다목적실
	3층	172.9㎡	◦ 다목적 체육시설

○ 조례안 제9조제4항 관련한 목욕탕 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표3 목욕탕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일 반 인	7,000원	
장애인 및 보호자	5,000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65세 이상의 자	5,000원	
수 급 자	5,000원	
한 부 모 가 족	5,000원	
국 가 유 공 자	5,000원	
미 취 학 아 동	5,000원	
자 원 봉 사 자	무료	65세 이상의 자 및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월 정기 사용료	125,000원	

다. 검토결과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
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비용추계서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은 1층 목욕탕 및 3층 다목적 체육시설 비용만 추계함
 - 2층의 도서관과 보건지소는 운영예산 기 확보
 - 인건비는 2020년 최저임금 단가 적용
 - 2020년 상반기(1월중) 편익시설 개소 전제 작성
 - 연간 물가인상비는 반영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인건비	-	-	-	-	-	
	○ 운영비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806,000
	소계(a)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806,000
세출	○ 인건비	183,132	183,132	183,132	183,132	183,132	
	○ 운영비	148,200	148,200	148,200	148,200	148,200	
	○ 시설비	-	-	-	-	-	
	○ 자산취득비	-	-	-	-	-	
	소계(b)	331,332	331,332	331,332	331,332	331,332	1,656,660
□ 총 비용(a-b)		-170,132	-170,132	-170,132	-170,132	-170,132	-850,6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자체재원	331,332	331,332	331,332	331,332	331,332	1,656,000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331,332	331,332	331,332	331,332	331,332	1,656,000

5. 작성자 : 마을자치과 주민참여팀 한지연(2627-199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1. 예산 총괄

구분	세부사업	재원	소요액(천원)
총계		구비	331,332
인건비	소계	구비	183,132
	목욕탕 운영인력 (관리 1, 매표 2, 탕 4)	구비	157,332
	청소인력 5명	구비	25,800
운영비	소계	구비	148,200
	동력비	구비	118,200
	기타운영비	구비	30,000

2. 세부사업 계획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예산(천원)		
편익시설 운영	목욕탕 운영	관내주민	목욕시설 제공	331.332	- 목욕시설운영 - 취약계층 목욕봉사	지역주민 편익 증대
	도서관 운영	관내주민	주민 문화시설 제공	82,000	- 도서 대출·열람서비스 - 도서 프로그램운영	지역주민 문화 수준 고양
	보건지소 운영	관내주민	주민건강 증진	170,000	- 건강 상담 및 예방 사업 - 건강 교육 및 재활시설 운영	주민 건강 증진
	다목적체육시설 운영	관내주민	주민자치프 로그램 장소활용	-	-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